(별지 제13호의2 서식) (신규 94.6.10)

표 준 계 약 서

의뢰 내용	매각. 매입. 임대. 기타( )

중개의뢰인(갑)은 이 계약서에 의하여 별표에 표시한 중개대상물에 관한 매매(임대차. 기타)의 중개를 중 개업자(을)에게 의뢰하고 을은 이를 수락한다.

1. 을의 의무사항

① 을은 갑에게 문서로서 2주일에 1회이상 업무처리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.

② 을은 중개대상물을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이 전속계약 체결후 지체없이 공개하여야 하며 중개대상물을 공개한 때에는 지체없이 갑에게 거래정보망등에 공개한 내용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.

③ 부동산중개업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. 설명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.

2. 갑의 의무사항

다음의 경우에는 갑은 그가 지불하여야 할 법정중개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. 다만, ③의 경우에는 법정중개수수료의 50퍼센트 범위내에서 을의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.

①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내에 을외의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경우

②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내에 을의 소개에 의하여 알게 된 상대방과 을을 배제하여 거래한 경우

③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내에 갑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

3. 유효 기간	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. ※ 유효기간은 3개월을 원칙으로 하되, 갑과 을의 협의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른다.
4. 중개수수료	원으로 한다. 단, 중개의뢰가액과 거래가액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한다

5. 이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 과 을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6. 이 계약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간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각자 서명. 날인한 후 쌍방이 1통씩 보관한다.

년 월 일

계 약 자

중개의뢰인(갑) :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:

주소 전화번호 :

중개업자 (을) : 성명(대표자)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:

상호(명칭) 전화번호 :

주소(주된사무소) 허가번호 :

www.bizforms.co.kr